

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(변경)에관한의견제시의견

의안번호	108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8. 20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사유

- 0 고성읍의 남.북을 연결하는 도로의 미개설로 교통체증 및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신기~남포간 도시계획도로 (대로3-2호)를 시행하고 있으나,
- 0 신기~남포간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구간중 성내리(옥골) 주민들은 토지가 협소하고 주택이 노후하며, 연령층이 높고 영세민이 많아 지급되는 보상비로는 인근토지로 이사를 할수 없는 실정으로 이주단지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,
- 0 인근 서외리 댕섬부근(생산녹지지역)에 이주단지(8,646㎡)를 조성코자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결정 코자함.
 - 용도지역변경 : 생산녹지지역 → 일반주거지역
 - 면적 : 7,913㎡ (733㎡는 기 주거지역결정됨)
 - 이주희망자 : 22가구정도

2. 의견청취 내용

- 0 용도지역결정(변경) 여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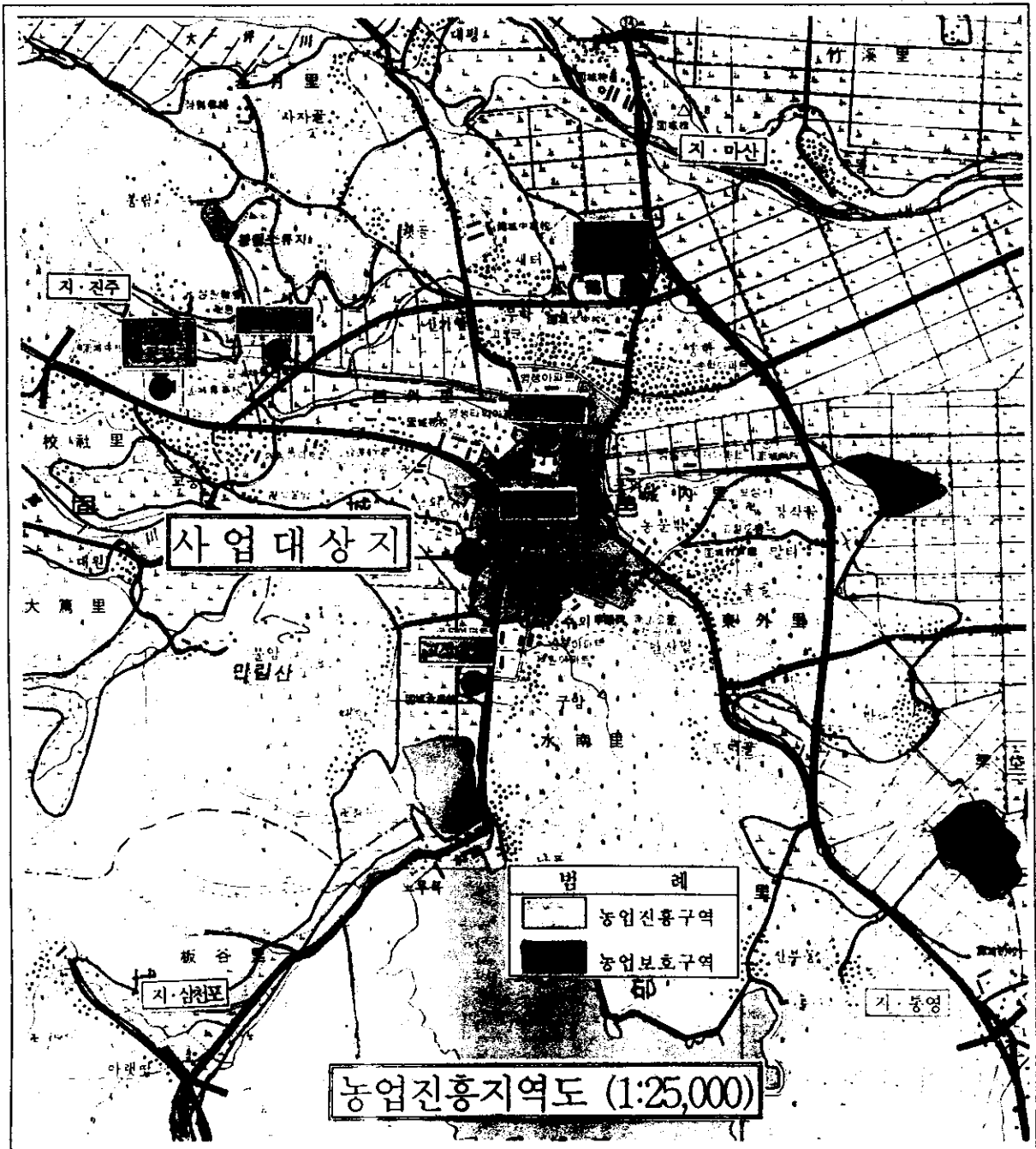
3. 의견을 듣게 된 경위

- 0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음.

위치도(축척 1/25,000)

〈해 제〉

- 위 치 :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49-2번지일원(0.9ha)
- 목 적 : 고성읍 도시계획 변경결정
- 용도지역 : 농업진흥지역



서외리 이주단지 조성계획도

S=1:1,200

